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23. 9. 22.>

# 소독업 신고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7일 |
|---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자 | 성명(대표자) | 주민등록번호 |
| | 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|
| 명칭 | | |
| 소재지 | | |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첨부서류 | 시설·장비 및 인력 명세서 | 수수료<br>없음 |
|---|---|---|

처리절차

| 신고서 작성 | → | 접 수 | → | 확 인 | → | 결 재 | → | 신고증 작성 | → | 발 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자 | | 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 | | | | | | | | |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